



# 방위비분담금 이것만은 알자!

방위비 분담금이 뭐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국은 한미소파 위난이라는데?

미국은 공평한 분담(50%) 요구, 우리는 이미 73% 부담중..

쓰고 남은 방위비분담금이 조원 넘게 있다?

남은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은 돈놀이에 탈세까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배버들러 미군기지이전비로?

이 작은 책자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 권의 제작비는 500원입니다. 자발적 후원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방위비분담금’이란 말의 유래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패전국이 점령군의 주둔경비를 분담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에게 1945년부터 1951년까지 매년 주일미군 주둔비용(점령비)의 전액을 지불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자 미국은 주일미군 경비의 50%를 일본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은 미일행정협정(1952년)을 체결하였다.

이 미일행정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이 미국에게 지급한 주일미군 경비를 ‘방위비분담금’이라 불렀다.

일본에서 방위비분담금은 사실 **점령비 성격**을 가졌다. 일본 국민은 방위비분담금을 점령비의 연장으로 여겨 그 폐지를 요구하였다. 미국은 1960년 미일행정협정 개정 때 주일미군 경비 50%부담 규정을 삭제하였다.

# 1. 방위비분담금이란?

- 우리나라는 여러 명목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령 한국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 또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부지(땅)**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 또는 **요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 이런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이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을 맺어서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돈을 가리켜 ‘방위비분담금’ 이라 한다.
- **한미소파 제5조**를 보면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파견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 결국 **방위비분담금이란 미국이 책임져야 마땅한 주한미군 주둔비**를 특별협정을 맺어서 **우리 국민한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다.

## 2. 한국 방위비분담금의 역사적 배경

-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특별협정 체결을 기준으로 보면 1991년부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2년 이른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 1987년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미국은 한국에 소해정 파견과 승무원 파병, 경비지원 등을 요구했다. 미국이 한국방위와 무관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한국에 떠넘기고자 한 것이다.
- 우리 국민은 이런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한미당국은 198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페르시아만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 해군 항공기 정비 지원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증액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1989년 4500만 달러(302억 원), 1990년 7000만 달러(495억 원)의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였다.
- 1991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처음 체결되는데, 그 배경에는 냉전 종식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군사전략의 변화가 있다.

- 1990년 발표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은 미군의 동아시아 계속 주둔의 명분(북한 및 극동러시아 위협 대응)을 찾음과 동시에 **미군주둔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 미국은 이 구상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4만7천 명에서 3만 명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강요하였다.

“한국이 결국 (1991년에) 인건비 지원을 개시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주한미군 감축 압력이었다.”(남창희,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2호, 2002. 12, 91쪽)

- 1991년 체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제1조)은 “한국은……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1991년 처음 체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5년마다 새로 갱신되면서 모두 9차례 체결되었다. 2018년 현재 10차 특별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 3. 방위비분담금 내역(항목)과 문제점

#### ■ 인건비

- 한국인 노동자(2018년 8612명)의 임금을 75%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는 2018년 기준 3710억 원으로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의 38.6%를 차지한다.
- 한국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데도 미국은 자국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를 억제하면 방위비분담금을 군사건설비에 더 많이 배정 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한국인 노동자는 전용식당도 없는 등 복지가 매우 열악하다.

#### ■ 군사건설비(군사시설개선비)

- 주한미군의 막사나 장교숙소, 훈련장, 주차장 등 군사시설을 현물(설계·감리는 현금)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사건설비는 2018년 기준으로 4442억 원이며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의 46.3%를 차지한다.

-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회, 용산미군기지 고가도로, 초호화 미군숙소 등에 투입되는 등 낭비가 심하다. 미국은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미군기지이전비로 전용하고 군사건설비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자놀이도 하였다.

## ■ 군수지원비

- 군수지원은 2018년 기준 1620억 원이며 방위비분담금의 16.9%다. 군수지원 사업에는 미8군 전용탄약(14.5만 톤) 및 미태평양공군탄약(3.4만 톤) 저장관리/주한미군 및 미태평양사 항공기정비/전쟁예비물자(WRM)정비/보급품 구매/화물 및 인원 수송/유류분배·저장·수송·수리·정비/시설유지 및 보수/기지운영 지원 등이 있다.
- 미 태평양공군 탄약의 저장관리나 미태평양 해군 항공기 정비 등은 한국방어를 넘어서는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혈세를 쓰는 것은 부당하다.

## 4. 미국의 동맹국은 모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나?

- 미군지위협정(소파)에 관한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주는 나라는 미 동맹국 중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 독일은 한 때 '상계지불협정(offset payment agreement)'을 맺어 주독미군 주둔비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이 있다.
- 그러나 이 협정은 1961~1975년까지만 시행되었고 그 이후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 미 국방부의 2004년 「동맹국 공동 방위 부담 통계 해설집」(동맹국들의 미군주둔비용 부담금 비교)을 보면 한국과 일본, 독일 세 나라의 부담금이 동맹국 전체(27개국) 부담액의 81.3%를 차지했다.
- 직접비용(국방예산에서 직접 지불되는 비용으로, 임대료나 세금 면제와 같은 간접비용과 구분됨)만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전체의 90%를 부담했다.

-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동맹국 전체가 부담하는 직접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두 나라만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주둔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맺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인데 반해 일본은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편승해 군사대국화를 꾀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측면이 있다.
- 대표적인 미군 주둔국인 한국과 일본, 독일의 미군 지원액(직간접비용 합계, 2010년 기준)을 GDP 대비로 보면 한국은 0.19%로 일본 0.14%의 1.4배, 독일 0.026%의 7.3배나 된다.
- 즉, 지불능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미군에게 가장 많은 직·간접적 지원을 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 5.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법성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첫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모법인 한미소파 제5조에 위배된다. 한미소파 제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 ■ 한미소파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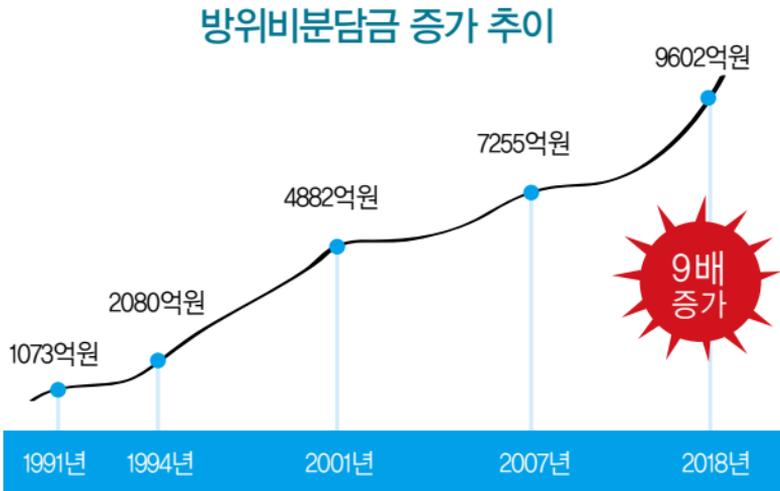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 둘째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그 외 다른 미군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 5조의 법적 취지는 한미 간 부담의 형평성을 기한 것이다. 그런데 **특별협정은 한국에게 시설과 구역 외에도 미군유지비까지 부담하게 한 것이어서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한 협정**이다.
- 셋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특별법으로 보아 일반법인 한미SOFA에 우선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또 특별협정은 임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7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또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일부 경비에 한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한국의 부담 범위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있다.(인건비 1개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등 4개항목→4개항목+미군기지이전비)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특별협정으로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부당한 협정**이다.

## 6. 한국민 허리 휘게 하는 방위비분담금

- 1991~2018년 사이 우리 국방비는 7조4524억 원에서 43조1581억 원으로 5.8배 늘었다. 같은 기간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 원에서 9602억 원으로 무려 9배가 늘었다.
-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1.4%에서 2018년 2.2%로 커졌다. 방위비분담금의 급증이 국가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국방예산 24조7572억 원(운영유지비와 무기도입비의 합)의 3.9%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대의 운영비나 무기도입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는 그 가치가 92억 달러(10조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로 평가된다.(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호, 2011년 8월) 그런데 방위비분담금은 그 누적액이 1991년~2011년까지만 쳐도 10조4184억 원(1991~2017년까지는 16조원)으로 주한미군의 장비가치를 뛰어넘는다.

- 이는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 미군의 중요 장비를 대체할 수도 있었다는 뜻으로 방위비분담이 우리의 자주적 방위력 향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 7.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72.6%를 부담

-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1차 회의가 2018년 3월 7~9일 열렸고, 2차 회의가 4월 11~12일 열렸다. 미국은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 2017년 11월 "한미정상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였다"(「한미공동 언론발표문」), '공정한 분담에 대한 열망'을 미국이 발표문에 넣은 것은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분담 증액을 노린 사전 포석 성격이 짙다.
-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비인적 미군주둔비'(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의 50%가 안 된다고 하면서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정작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2016년 방위비분담금 9441억 원(8.21억 달러)이 **'비인적 주한미군 주둔비의 50%'**라고 쓰고있다.(「한미관계」, 2017. 5, 23쪽)
- 그러나 한국은 방위비분담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에서 지출하는 직접 지원(2016년 기준)을 보면 방위비분담금 9441억 원을 포함해 부동산 지원액(129억 원), 카투사 운영비

(100억 원), 미군기지이전비(6667억 원), 행정안전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1843억 원), 미군 공무피해 배상 33억 원 등 1조8243억 원에 이른다.

- 간접지원(2016년 기준)을 보면 미군공여지 임대료 평가(1조1642억 원, 국방부의 과거 기준으로 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10%, 기타공여지는 5% 적용), 카투사지원 가치평가액(1026억 원), 미군탄약저장 부지시설비(1237억 원), 세금 및 공공요금 등 감면(1823억 원, 2010년 기준) 등 1조5728억 원이다.
- 직·간접액을 합한 **한국의 부담은 3조 3971억 원**이 된다.
- 한편 2016년 미국 정부 예산에서 지출된 비인적 주한미군 주둔비는 1조2823억 원이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한국의 분담률은 3조3971억 원÷4조6794억 원(한미 부담 합계)×100=72.6%**이다.
- 이처럼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 상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이 공평한 부담을 안한다는 미국 주장은 터무니 없다.**

## 8. 사드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까?

-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THAAD)의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사드의 연간 운영비는 종말모드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방위비분담금의 3~5%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비에 쓰게 허용하면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시설과 구역' 이외에는 모든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소파 제5조의 위배다.
-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장비 운영과 관련해 방위비분담의 항목('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는 적용할 부분이 없다. 왜냐하면 사드장비운영과 관련해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드장비 특성상 필요한 민간 기술인력은 록히드마틴과 같은 미국 민간인력으로 채워진다.
- 숙소 등의 군사시설도 기존 골프장 시설이나 인근 왜관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 군수지원비도 미군 소유 탄약정비 등

그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 사드에 적용될 항목이 없다.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면서 “사드는 10억 달러 체계”(2017. 4. 27)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 **주한미군 보유장비에 대해서 장비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는 것은 한미소파 제5조에 위배되며 자국 군대의 장비비용을 타국에 떠넘긴 사례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다.**
-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MD기지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이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도 본질적으로 미국 방어 위한 것이므로 비용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 9.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 - 미집행 현금, 감액, 불용액

-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9830억 원에 이른다.
- 첫째 2002~2008년 사이 군사건설비에서 빼돌린 1조1193억 원 중 미군이 불법으로 쓰고 남은 돈과 2009~2017년 사이 현금지원액 중 남은 돈을 합하면, 2017년 12월말 현재 남아있는 ‘미집행 현금’은 3292억 원에 이른다.
- 둘째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이인 ‘감액’이 2011~2017년 간 5570억 원이다.
- ‘감액’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정해진 방위비분담금 액수(협정액)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발생한다. 예산을 협정액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은 대규모 미집행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다. 협정액보다 감액하여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차액을 우리 정부는 추후에 미국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셋째 ‘불용액’은 2009~2017년 사이 합쳐서 968억 원이 발생하였다. 불용액은 사업을 정상대로 집행하고 남는(사실상 절약되는) 예산이다. 불용액은 국가재정법 상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다.
- 그래서 2008년까지는 불용액이 발생해도 미국에 다시 지급하지 않았다.
- 그런데 2009년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때부터는 “입찰 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는 ‘군사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7항)’를 채택함으로써 불용액을 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불용액 지급은 국가재정법 상의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위반되며 미국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 한 해 방위비분담금을 넘는 규모의 돈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 10. 방위비분담금이 ‘GDP의 극히 일부여서 인상돼도 상관없다?’

-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GDP의 극히 일부(2016년 방위비분담금 9441억 원은 GDP의 0.06%)여서 미국과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거나 ‘우리 경제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국민정서 상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이해될 수 있다’ (KBS1라디오 공감토론, 2018. 3. 21)는 식의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 그러나 위 주장은 한국의 주한미군 경비 지원이 방위비분담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부동산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카투사 지원 등 각종 명목의 직접 및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위 주장은 **온갖 명목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재정적 고통을 경시하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푼돈’(peanuts) 취급하며 한국이 공평한 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트럼프의 발언을 사실상 두둔하는 것이다.**
- 방위비분담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방예산의 2.2%에 이르며 방위력개선비 대비로는 무려 7.1%에 달한다.**

-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27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급됨으로써 국가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경제에서 갖는 가치를 따져보자. 청년실업자가 청년실업자가 43만 명이 넘는데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2018년)이면 청년을 적게는 2만5268명(대기업 대졸초임기준)에서 많게는 3만8408명(중소기업 대졸초임기준)을 고용해 청년실업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청년노동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그 기회비용은 몇 조원이 된다.
- **주한미군 2만8500명은 방위비분담금(2016년 기준 9441억 원)을 통해 1인당 3369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 3198만 원(2016년)을 넘는다.** 우리 국민소득을 넘는 지원을 주한미군에 대해서 매년 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정서 상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박근혜 정권조차 9차 방위비분담 협상 때 '삭감'이 목표였고 이는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때문이었다.

## 11.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의 부당성

- 2017년 11월, 한미 정상은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사드 배치 및 운용 등과 같은 연합방위태세와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 그러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을 구실로 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미군 유지비(주둔비)를 미국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 5조의 위배다.
- 또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순환 배치되는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도 미국은 B2, B52, 핵잠수함 등 한반도 투입에 따른 비용 증대를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항모나 군사훈련 등은 주둔비용과 다른 개념이며 미군 수나 부대규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북핵 위협대응은 주한미군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중앙일보 2013. 7. 26)
- 북한이 3.6 남북 합의(남북 정상회담, 북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등) 및 3.8 북미 합의(북미 정상회담 등)를 통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고 천명한만큼 미 전략자산의 배치를 이유로 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명분이 없다.
- 한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는 대북한 선제공격 의도로 받아들여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로의 전용은 불법

- 미국은 '해외 주둔미군 재배치계획'(해외 미군을 불박이 군에서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계획, 2003년)에 따라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을 추진하였다.
- 미국은 '요구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국과 합의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미2사단이전비를 자국 예산이 아닌 방위비분담금(한국돈)으로 충당하였다.
- 미국은 미2사단이전비용에 쓸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에서 현금을 빼돌려 축적하였다. 그 액수가 합쳐 1조1193억 원이다. 2008년 이후에도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 평택이전비로 계속 쓰고 있다.
- 미국은 미2사단이전비로 사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의 대폭 증액을 한국에 압박하였다. 이로 인해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01년 4882억 원에서 2017년 950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군사건설비는 1041

억 원(방위비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3%)에서 2017년 4250억 원(44.7%)으로 4배나 급증하였다.

- 우리 정부는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의 국회비준 동의 때 용산미군기지이전비는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평택 미군기지이전비용의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고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이전비용**(건설비만 약 108억달러)의 **90% 이상을 부담**하였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가져다가 미2사단의 평택이전비에 썼기 때문이다.
- **방위비분담금의 이런 전용은 미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LPP개정협정 위반**이다. 또 그것은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규정**(45조)을 어긴 것이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그 해에 지출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조)도 위반한 것이다.
- 미국이 우리의 재정주권을 제멋대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 13. 우리 국민 혈세로 돈놀이 한 주한미군

- 미국이 2002~2008년 사이 해마다 군사건설비에서 빼돌린 돈이 모두 1조1193억 원(미 군사은행인 커뮤니티뱅크에 예금)에 이른다. 그런데 커뮤니티뱅크는 이렇게 불법축적한 현금을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여 3천억 원이 넘는 이자를 얻었으며 이를 본국(미 국방부)에 송금했다.
-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를 얻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7년이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이런 의혹을 줄곧 부인하다가 2013년 11월, <한겨레>가 2006~2007년 사이에만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566억 원에 이른다(평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로부터 확보한 사실)고 보도하자 결국 이자발생 사실을 시인했다.
- 한미소파 7조(접수국법령 존중)는 주한미군이나 미국정부가 한국에서 영리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투자해 이자소득을 올린 것은 주한미군 본연의 임무로부터 일탈한 행위이자 한미소파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 주한미군이 우리 영토 내에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영리행위를 하여 이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한미소파 14조) 하지만 주한미군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3천억 원의 12%인 360억 원)까지 한 것이다.
- 2014년 미국정부는 이자소득 발생은 시인하면서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즉 이자소득을 얻은 것은 커뮤니티뱅크이고 커뮤니티뱅크는 민간 상업은행이므로 이자소득을 미국 정부(국방부)가 얻은 것은 아니라고 발뺌하였다.
- 그러나 이런 변명은 곧 거짓으로 들통 났다. 커뮤니티뱅크의 홈페이지는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임을 확인하고 있다.
- 커뮤니티뱅크가 국방부 소속 기관임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미 국방부는 '전체 투자 잔고에서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만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거나, '이자소득을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써버렸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는 **이자소득의 국고환수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미리 차단막을 치려는 술수**다. 커뮤니티뱅크가 운용한 방위비분담금 액수(투자 원금)와 이자율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자수입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썼다하더라도 이 기관이 미 국방부 소유인만큼 **이자소득을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미국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한국 정부는 “이자소득의 정확한 규모 산정 불가 감안 시, 차기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소득의 정확한 규모 산정 불가’나 ‘차기 협상에서 합리적 반영 방안 검토’ 등의 한국정부의 입장은 이자소득 환수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해보려고 하는 미국 정부에 영합하는 태도다.
-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답게 미국에게 이자소득 규모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자를 회수해야** 한다. 커뮤니티뱅크가 미 정부 기관으로 밝혀지면 차기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이자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73%(약 1조원) 더 넘겨주고  
공평한 분담하라니...

#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말라!

**NO SMA! NO MONEY FOR US TROOPS!**



## 14. 군사건설비의 현물지원체제 전환이란?

-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로의 불법 전용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투명하고’ ‘책임있게’(적법하게)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군사건설비의 전면 현물지원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때 “군사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군사건설비의 12%)을 제외하고는(88%)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는 교환각서(2009년 1월)를 채택하였다.
- 2008년까지는 군사건설비의 95%가 현금으로 지급되던 것을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한 것은 그 취지가 **주한미군에 현물로(즉 한국이 군사시설을 지어서) 제공하면 주한미군이 이전처럼 군사건설비를 마음대로 미군기지이전비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 비밀 전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이 국회 비준을 받기 쉽도록 건

설 부문 현물 지원에 합의해주는 대신 미국이 요구하면 현금 지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출구 전략’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것을 강하게 주문” (세계일보, 2014. 3. 16)하여 이를 관철 시켰다. 미국이 현물 대신 현금을 요구하면 한국이 이를 들어주어야 해 ‘전면 현물지원체제’란 출발부터 허점을 안고 있었다.

- 더욱이 우리 정부는 2009년에 군사건설비를 미군기지이전비에 써도 좋다는 것을 미국에 양해해 주었다. 정부 스스로 ‘현물지원체제 전환’의 취지를 짓밟은 것이다.
- 2014년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는 88% 현물지원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 나아가 한미당국은 주한미군의 특수정보시설(SCIP)에 대해서는 추가 현금지원(설계감리비 12%에 더해)을 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를 하였다.(한겨레, 2017. 10. 12)
- 한미당국은 국회가 협정을 비준동의하자 이면합의를 이행 약정에 포함시켜 이를 공식화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여 현금지원을 합법화한 것이다

## 15. 방위비분담금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

-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마다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 하곤 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10차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2018년 3월 14일 “우리는 그들(한국)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면서 마치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안 올려주고 배길 것 같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 트럼프는 대선 후보 때도 “엄청나게 부유한 대국들을 보호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합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면…… 나는 이들 나라에 ‘스스로 자기를 지키게 될 거야. 축하해!’라고 말할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방위비분담금 인상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그렇지만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올려 주지 않아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에서 자신의 전략적·안보적 이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 한국전쟁 이후 1971년, 1991년, 2004~2005년 등 몇 차례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은 닉슨 독트린(1969년), 냉전 종식(1990년), 해외 미군재배치계획(2003년)과 같은 국제정세 변화나 미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지 방위비분담금과 직접 관련이 없다.
- 1991년이나 2004년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되었어도 주한미군이 감축됐고 1998년, 2006년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었지만 주한미군 감축은 없었다.
- 한국군은 세계 10위의 군사대국으로 잠재적 전쟁수행력은 물론이고 현존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북한을 훨씬 앞선다. 한국은 주변국에 대해서도 방어에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겁낼 이유도 필요도 없다.

## 16.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다른 쟁점들

- 첫째 미국은 군사건설비를 미 2사단의 평택이전에 쓰느라 주한미 공군의 군사건설사업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쓰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8년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더라도 군사건설비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군사건설비 가운데 60%정도만 미군기지이전비로 썼고 나머지는 기존 미군기지(오산이나 군산 등 미공군기지 포함) 군사건설에 써왔다. 또 '군사지원비'에 '시설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어, 매년 3백~6백억 원 이상이 기존 기지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었다. 설사 미국 주장대로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에 필요한 만큼 군사건설비를 쓰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이전비 전용은 불법이므로 우리 국민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또 군사건설비에서 현재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3292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군사건설비는 크게 줄여야 한다.
- 둘째 8차 특별협정 기간(2009~2013) 발생한 감액분 3035억 원은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며 9차 특별협정기간(2014~2018)에 발생한 감액분

## 2536억 원도 유효기간 뒤에는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 셋째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넷째,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단기간(2년 이내)으로 하여 방위비분담의 불법적인 문제들을 시정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방위비분담금 총액이나 결정방식 등에 탄력적 대응을 해야 한다.
- 다섯째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2017년 8월 23일 전체 국방위 회의)한만큼 **‘군사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7항**(“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은 **폐지되어야** 한다.
- 여섯째 **군사건설비 추가 현금지원에 관한 이면합의**(이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으로 편입)도 **폐지되어야** 한다. 군사건설비가 사드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도 이면합의(이행약정)는 폐지되어야 한다.

## 17. 국회의 역할은?

- 국회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다. 국회는 예결산 심의확정권도 갖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이런 권한을 행사하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방위비분담금이 낭비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을 책임이 있다.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문제로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과도성이나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 전용의 불법부당성, 이런 전용에 대한 정부 양해의 불법성, 방위비분담금 이자발생,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무력화 등을 들 수 있다.
- 이들 문제는 모두 우리의 주권과 국익에 관한 것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번번이 문제만 제기할 뿐 한 번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부결시킨 적이 없다.
- 이러다보니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통과시켜줌으로써 여기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가령 국회

는 2007년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때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에 전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 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그러나 정부는 2008년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2013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 전용을 허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는 전횡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줌으로써 정부 견제라는 막중한 책임을 팽개치고 말았다.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의 굴종적 태도에는 신앙에 가까운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성도 작용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이 갖는 온갖 불법성과 불평등성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 국회는 과도한 수준의 현재의 방위비분담금이 만약 삭감되지 않고 증액되거나 미군기지이전비 전용 등의 불법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10차 특별협정을 부결시키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 TAKE ACTION

방위비분담금...

미군이 주둔하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구요?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이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구요?

아닙니다.

매년 1조원 넘는 예산을 미군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말이죠.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주세요**

**서명하기 : <https://goo.gl/XbS8zV>**

#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Understanding Korea's Cost Sharing for USFK  
in the age of Trump*

한미동맹의 현주소

Realities of the S.K.-U.S. Al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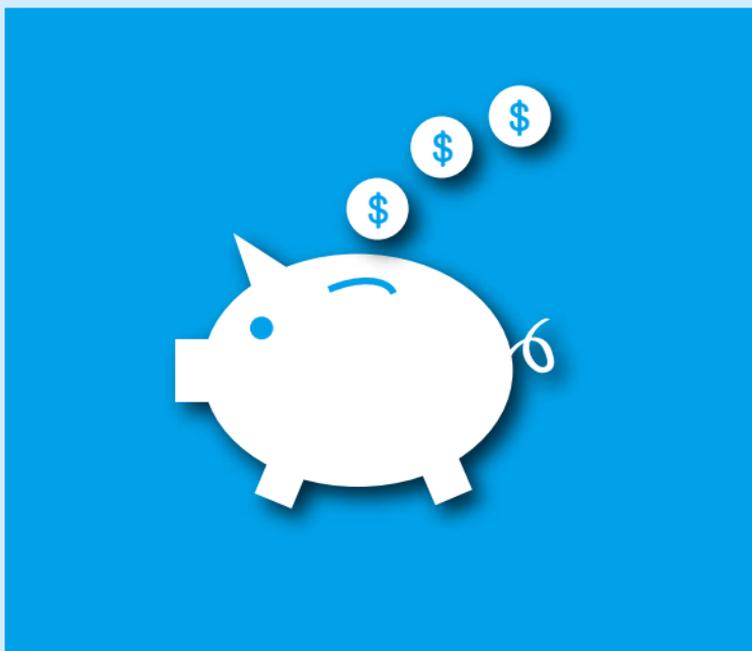
박기학 지음



출간일 2017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216쪽 | 310g  
크기 148\*209\*20mm  
가격 16,000원

박기학 저 | 한울아카데미

# 방위비분담금 대폭 줄일 수 있다!



대표 집필 : 박기학, 유영재 || 소책자 신청 및 문의 02-711-7292 ||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 회원가입 02-712-8443 [www.peaceone.org](http://www.peaceone.org)